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화장품산업”을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벤처기업 중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화장품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며,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해외진출 역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산업 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정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시험·인증 등 공동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원료·용기의 제조·공급,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Ⅱ.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